

「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5월 27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항공운송사업자등이 항공교통이용자가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에 대하여 변경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, 위탁수하물을 실지 못한 경우 발생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하여 안내하도록 하는 등 항공운송사업자의 안내 의무를 구체화하여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수하물을 실지 않은 경우 즉시 안내하도록 의무화(안 제5제5항)
- 나. 항공사 등이 안내하여야 하는 취소·환불 관련 거래조건에 항공권의 유효기간과 미탑승시 환불 정보를 포함(안 제6조제1항)
- 다. 미사용 항공권에 대한 변경·환불 안내 강화(안 제6조제3항, 별표1)
- 라. 재검토기한 등 현행화(안 제12조 및 제13조)

3. 의견제출

「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」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18일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→ 정보마당 → 법령정보 →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이유)

현행	개정안	의견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·전화번호

다. 보내실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5동, 우편번호 30103)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
(전화 044-201-4231, 4230)